◉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-64호

행정처분 통지

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하고자 하나,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08월 22일

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

1. 대상업체

업종 (인허가번호)	업체명	대표자	소재지
식육포장처리업 (제20170380442호)	㈜공신미트	박*행	강원도 춘천시 우묵들길 36, 1층(퇴계동)

2. 처분사항

○ **시정명령(2022. 9. 22일자)**

3. 처분사유

○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9조제10항 위반

-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.운용하는 영업자 등은 영업을 개시한 연도 또는 인증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를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에 따른 정기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나, 상기 당사자는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를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 교육훈련을 미이수한 사실이 있음

적용업종	인증번호	비고
식육포장처리업	제2017-1-0069호	정기교육훈련 미이수 (2020. 8. 21. ~ 2021. 12. 31.)

4. 근거법령

○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9조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

○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9조의4제8호,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8제1항제7호 및 제2항 관련 [별표14의2] 제9호

5. 고지내용

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[서면 또는 온라인(simpan.go.kr)]하거나,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

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※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, 온라인 행정심판(www.simpan.go.kr)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
○ 문의처: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(Tel: 02-2640-1316)